

## 教育課程과 教科書의 連繫性

—法·令·告示·規定·指針의 分析—

尹 八 重

(教育行政研修院)

### I. 序 言

교육과 교육과정의 연계성은 분명하다. 교육에서 겨누는 目的과 다루고자 하는 內容과 활용하고자 하는 方法 등이 교육과정을 통하여 보다 분명하게 밝혀져서 교육에 관한 생각이 교육의 실천쪽으로 다가가게 된다.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연계성도 분명하다. “교육과정에 따른 새 교과서”, “교육과정의 취지와 내용을 구체화시킨 교과서”,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근거로 해서 만든 서적”,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해석에 기초한다” 등과 같은 표현에서<sup>(1)</sup> 확인할 수 있듯이 이들 서로간의 연계성은 확실하다.

교육과정 그 자체에 관한 연구는 많이 수행되어 왔다. 그리하여 한 理論體系로서의 교육과정은 教育學의 한 독립된 탐구 분야로서의 자리를 확보한지 이미 오래되었으며 實定의 「교육과정」도 각급·각종 학교의 것을 모두 갖추고 여러 차례에 걸쳐 거듭 改正되어 왔다.

다른 한편으로, 교과서에 관한 연구의 成果도 자꾸 累積되어 왔다. 教科書觀을 비롯하여 역사·개발원리·구조·외국과의 비교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방면에 걸친 다양한 연구가 꾸준히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교육과정과 교과서 간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는 별로 수행된 것이 없다. 그리하여 「교육과정」이 「교과서」로 구체화되고 「교과서」가 「교육과정」에 기초할 수 있을, 보다 확실한 이론과 지침을 마련해내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sup>(2)</sup> 더구나 교과서관이 점차적으로 변화되어 「교과서」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것으로 인식되어 교과서의 기초인 교육과정이 교과서쪽으로, 그리고 교육과정의 구체물인 교과서가 교육과정쪽으로 다가가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兩者間의 關連에 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1) 이 표현들은 각각 「韓國의 教科書 變遷史」, 64面(두 곳), 「좋은 교과서란 어떠한 교과서인가?」, 2면, 「教育課程과 教科書 改善을 위한 基礎研究」, 7면, 「교과서체제개선연구」, 17면에서 따왔음.

(2) 꺾쇠(「□□□」)는 冊이나 法·令, 워점(□□□)은 強調, 작은 따옴표(「□□□」)는 冊이나 論文의 크고 작은 題目 또는 本 論究의 引用임.

이 論究는 위와 같은 論脈에서 교육과정과 교과서 사이의 연계성의 實相을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에서의 ‘실상’이란 관련되는 法·令·告示·規定·指針의 내용을 뜻하는 것으로서 「교육법」에서부터 ‘중학교 사회과 1학년 교과서 집필지침’에 이르기까지의 연계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 目的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법」(및 「교육법시행령」)에 규정된 교육과정 關聯條項을 분석한다. 「교육법」은 「교육과정」, 더 나아가서는 「교과서」의 모습을 구체화해 주는 端緒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교육법」의 규정에 근거한 「教育課程告示」 중의 ‘교육과정구성의 방향’이 위의 「교육법」 및 동 「시행령」과 어느 정도로 연계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이는 「교육법」상의 教育 ‘理念’과 ‘目的’이 「교육과정」에 반영되지 않고서는 「교과서」에까지 연계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방향’이 「중학교 교육과정」에 구체적으로 연계되는 側面과 程度를 확인한다. 이 ‘방향’이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에 제대로 연계되어야만 다음의 단계인 「교과서」에까지 연계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중학교 교육과정」의 ‘목표’가 ‘중학교 사회과’의 ‘목표’와 연계되는 바를 알아 본다. 「교육과정」의 목표는 특정 教科로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중학교의 ‘사회과’의 ‘목표’가 ‘중학교 사회과 1학년’의 ‘목표’와 ‘내용’에 어떻게 具體化되는가를 확인한다. 여기에서 ‘목표’가 ‘내용’으로 번역되기 때문이다. 여섯째, ‘중학교 사회과 1학년’의 ‘목표’와 ‘내용’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으로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확인한다. 여기에서부터 「교육과정」이 교과서로 연계되기 때문이다. 일곱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 「1종 교과서 편찬 세부계획」의 ‘1종 교과서 집필지침’가운데의 ‘일반지침’과 연계되는 바를 확인한다. 교과서는 ‘지침’에 따라서 統制되기 때문이다. 여덟째, ‘일반지침’이 ‘교과목별지침’으로서의 ‘중학교 사회과 1학년 교과서 집필지침’으로 한층 더 구체화되는 바를 알아 본다. 이 ‘지침’이 특정한 「교과서」의 모습을 가장 구체적으로 통제하기 때문이다. 아홉째, 중학교 사회과 1학년의 교과서를 집필할 때에 지켜야 하는 ‘교과목별 지침’이 중학교의 사회 「교과서」에 연계되어 마무리되는 바를 最終적으로 확인한다. 여기에 이르러서야 「교육법」(및 「교육법시행령」), 「교육과정고시」, 「중학교 교육과정」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1종도서 편찬세부계획」, 「교과서 집필지침」, 「중학교 사회 1」 교과서가 서로 연계되는 전반적인 脈絡을 볼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論究는 「교육법」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教育의 理念과 目的이 종내는 각급학교·각교과·각학년의 교과서에 同質로, 그러나 다른 水準으로, 즉 점차적으로 보다 구체화되어 연계되어야만 한다는 論理의 ‘실상’을 파악하면서 관련되는 論議를 전개해 나아가고자 한다. 여기에서 示唆받을 수 있는 바를 綜合하면 교육과정, 교과서 그리고 이들간의 연계성에 관한 새로운 探究의 領域을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Ⅱ. 敎育과 敎育課程

「敎育법」 및 「敎育법시행령」과 「敎育課程告示」의 관련 條項을 분석하여 敎育과 敎育과정에 관한 實定法·令上의 連계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敎育課程」과 「敎과서」와의 連계성을 分析하기 위한 前段階로서 필요한 절차라고 여겨지시기 때문이다.

### A. 「敎育法」(및 「敎育법시행령」)

「敎育법」에서의 「敎育과정」, 더 나아가서는 「敎과서」의 根源이 되는 조항은 제 1 조의 ‘理念’과 ‘目的’, 그리고 제 2 조의 ‘方針’이다. 그러나 「敎育法」에서 「敎育과정」을 직접 규정 한 대표적인 條項은 그 제 156 조(학과·敎과)이다. 그리하여 그 제 1 항은 “대학·사범대학·敎育대학·전문대학·각종 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의 학과 및 敎과는 大統領령으로, 敎育과정은 文敎부장관이 定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서, 그 제 3 항은 “敎과에는 필수과목 외에 선택과목을 둘 수 있다”고 규정짓고 있다. 이는 「敎育법」 제 1 조(이념), 제 2 조(목적), 제 93 조(국민학교敎育의 目的), 제 94 조(국민학교 敎育의 目的), 제 100 조(중학교敎育의 目的), 제 101 조(중학교敎育의 目的), 제 104 조(고등학교敎育의 目的), 제 105 조(고등학교敎育의 目的), 제 108 조(대학교敎育의 目的)에서 규정된 各級學校의 敎育 ‘목적’ 및 ‘目的’을 달성하기 위한 내용, 즉 ‘학과·敎과’와 ‘敎育과정’을 각각 「大統領령」과 文敎부장관이 定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論究의 前提에 따라서 볼 때, 「敎育법」에서 「敎育과정」의 根據를, 그리고 「敎育과정」에서 「敎과용도서」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마는, 「敎育법」에서 직접 ‘敎과용도서’에 관해서까지 그 大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 157 조는 “대학·敎育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 각 학교의 敎과용도서는 文敎부가 저작권을 가졌거나 검정 또는 인정한 것에 限한다”고 하고, 그 제 2 항은 “敎과용도서의 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 및 가격사정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령」으로 定한다”고 하여 그 구체적인 사항을 「大統領령」으로 委任하고 있다. 이 또한 位階上의 문제가 있다. 「敎育과정」은 文敎部長官이 定하면서도 그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마련되는 敎과용도서에 관한 사항은 오히려 「大統領令」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大統領령과 文敎部의 「告示」의 位階關係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런 규정 하나하나가 바로 敎育자들의 敎科書觀, 따라서 敎育과정관에 영향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하여 敎育과정 보다는 오히려 敎과서를 보다 重要視하는 傾向이 發源되게 할지도 모른다.

「敎育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공포·시행되는 大統領令인 「敎育법시행령」은 「敎育과정」 및 ‘敎과용도서’와 관련되는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학교의 교과는 도덕·국어·사회·산수·자연·체육·음악·미술·실과”의 9개로 하며(88조), “중학교의 교과는 도덕·국어·국사·사회·수학·과학·체육·음악·미술·한문·외국어 및 실업·가정에 관한 교과로 한다”(109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학과를 규정한 동시행령 제111조는 그 학과를 普通教育을 하는 학과와 專門教育을 하는 학과로 區分하고, 보통교육을 주로 하는 학과는 보통교과로 하며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학과는 농업·공업·상업·수산—해운·가사—실업·과학·체육·예술·외국어의 9개 학과로 나누고 있다. 다시 제112조는 “고등학교의 교과는 국민윤리·국어·국사·사회·수학·과학·체육·교련·음악·미술·한문·외국어 및 실업—가정에 관한 교과와 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같이 이 「승」은 「교육과정」의 ‘편제’의 대강까지를 규정해 놓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교육과정」을 탄생시키는 단계로 넘어가게 하고 있다.

## B. 教育課程告示

위에서 확인한 바대로, 現行의 「教育法」 및 「교육법시행령」은 비단 「教育課程」에 관련되는 측면 뿐만이 아니라 「教科書」에 관해서까지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교육법」, 「교육과정고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교과서 집필지침」, 「교과서」로 이어지는, 즉 上位法에서 下位法으로 내려오면서 점차적으로 特定한 교과서의 모습을 규정해 내려오는 論理에 비추어 볼 때 자연스럽게 못하다.

「교육과정고시」는 종전의 「교육과정령」을 대신하여 1979년 3월 1일부터 “교육법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사범대학·각종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의 각 교과의 교수요지, 과목 및 수업시간수를 정한 각 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고 하고, 각 학교 「교육과정」의 제정·개정사항을 고시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고시」를 통하여 제정·시행되는 각급학교 「교육과정」의 ‘구성의 방향’은 「교육법」 제1조에 규정된 弘益人間的 理念과 그 아래에 규정된 目的을 想起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제까지 힘써 온 한국인상을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수차례 걸쳐서 개정해 온 「교육과정」을 다시 수정·보완해야 하게 된 까닭을 밝힌 다음에, 건장한 사람·자주적인 사람·창조적인 사람·도덕적인 사람을 기르는 데 力點을 두어서 구성한다고 밝히고 있다.

위의 네가지 力點 가운데의 ‘자주적인 사람’의 보다 구체적인 모습은 ‘주체적인 자아의식’을 지니고 ‘자율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갖추며 ‘진취적인 개척정신’으로 ‘투철한 국가의식’이 있는 사람임을 밝히고 있다.

### C. 論 議

우리나라의 「교육법」은 교육기본법의 성격이 짙은 데도<sup>(3)</sup> 그 位相이 混亂스럽다. 그리하여 교육의 ‘理念’으로부터 시작하여 ‘目的’, ‘方針’에 이어 각급학교의 교육 ‘목적’, 및 ‘목표’를 규정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학과’와 ‘교과’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그리고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문교부장관에게 위임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과용도서에 관한’ 조항까지를 포괄하고 있다. 이 조항은 교과용도서의 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 및 가격사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定하게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교과용도서에 관한 것은 문교부장관이 定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즉 문교부고시로 제정·공포되는 「교육과정」상의 教科編制에 따른 교과서이기 때문에 다른 문교부고시 또는 그 以下의 규정에서 교과용도서의 저작 등에 관한 것을 규정하면 좋을 것 같다. 물론 다른 슝, 즉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교과용도서의 기초가 되는 「교육과정」은 문교부장관에게 위임하면서, 그 교육과정이 구체화되는 교과용도서의 발행·공급·가격사정까지를 「교육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실제로 「교육과정」의 개정보다는 교과용도서의 ‘개편’이나 ‘수정’이 보다 빈번할 것이다.

「교육법시행령」은 「교육법」에 의해 限定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교육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학과와 교과 가운데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것을 나열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런데도 국민학교의 것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시행령이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교육법」에서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은 좋지만 중·고등학교의 것만을 규정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교육과정고시」는 ‘교육법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告示되며, 그 ‘구성의 방향」에서도 홍익인간의 ‘이념’과 교육의 일반 ‘목적’을 기술하고 있어서 표면상으로는 「교육법」과 잘 연계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분석하여 그것들 사이의 연계성을 분석하는 일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Ⅲ. 教育課程과 教科書

「교육과정」이 「교과서」로 연결되는 바를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中學校 教育課程」의 ‘목표’를 분석하여 그것이 ‘교과활동의 목표와 내용’중의 ‘사회과’의 ‘목표’와, 더 나아가서는 ‘사회과 1학년’의 ‘목표’와 ‘내용’으로 연계되는 모습을 분석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이런 분석의 結果가 「교과서」로 연결되는 바를 분석해 나아가기 위하여 「교과

(3) 「私立學校法」이 따로 있지만 外國, 특히 日本의 경우에는 「학교교육법」, 「사립학교법」, 「사회교육법」이 따로 있음.

용도서에 관한 규정]과 「1종 교과서집필지침」으로까지 이어지는 一聯의 연계성을 확인하기로 하겠다.

### A. 中學校 教育課程

各級學校의 「교육과정」의 ‘구성의 방향’에 따라서 제정된 「중학교 교육과정」은 ‘교육목표와 편제’, ‘교과활동의 목표와 내용’, 그리고 ‘특별활동의 목표와 내용’으로 짜여 있다. 이 가운데에서 이 論究가 분석하고자 하는 直接的인 對象을 추려 보기로 하겠다.

#### 1. 目 標

「중학교 교육과정」은 크게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과 ‘중학교 교육과정’으로 나뉘어 있으며, 이 가운데의 ‘중학교 교육과정’은 ‘교육목표와 편제’, ‘교과활동의 목표와 내용’, 그리고 ‘특별활동의 목표와 내용’으로 다시 나뉘었다. 여기에서의 ‘교육목표’는 “교육법에 규정된 중학교 교육목적과 이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을 토대로 하여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고 하고, 모두 6개 항목의 ‘교육목표’를 나열하고 있다. 이 가운데의 두번째 항목으로 “건강한 집단 생활의 체험을 통하여 도덕적 판단을 기르고 국가 사회 발전과 인류 행복 증진에 봉사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3面)”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중학교 교육과정」의 목표가 “교육법에 규정된 중학교 교육목적과 이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을 어느 정도로 충실하게 토대로 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교육법」 제100조는 “중학교는 국민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위에 중등보통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등보통교육’이라는 ‘목적’을 ‘토대’로 했다는 말 또한 막연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그것들 사이의 연계성을 분석할 근거 또한 막연하다. 그리고 이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인 4개 항목, 즉 건강한 사람·자주적인 사람·창조적인 사람·도덕적인 사람을 기르고자 하는 ‘방향’이 「중학교 교육과정」에서의 ‘교육목표’와 어느 정도로 연계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의 4개 항목의 ‘방향’을 좀 더 細目化한 각 4개 항목, 그리하여 모두 16개 항목과 견주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방향’에서의 ‘건강한 신체’라는 항목이 ‘교육목표’ 6개항 가운데의 제1항의 ‘강인한 체력과 의지’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의 항목들이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로 연계되는가를 분석하기는 쉽지가 않지만 표현 그 자체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없다.

#### 2. 社會科의 目標

「중학교 교육과정」에서의 ‘교과활동의 목표와 내용’중의 ‘사회과’는 정치·경제·사회·문화·역사·지리내용의 통합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sup>(4)</sup> 위의 「중학교 교육과정」의 ‘교육목표중’의 어느 한 항목의 목표만이 ‘사회과의 목표’에 정확히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를

(4) 한국교육개발원, 「사회교사용 지도서」(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9), 4면.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우선 중학교 사회과의 '교과목표'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하고, 민주사회의 주인임을 자각하게 하며, 개인의 행복과 사회·국가의 번영 및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기른다(44면)"고 되어 있다. 그 가운데의 제 2항은 "각 지역의 특성을 인간과 환경과의 관련속에서 이해하게 하고 인류생활의 발달과정과 각 시대의 문화적 특색을 파악하게 한다(44면)"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연계되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교육목표'를 찾을 수가 없다. 역부러라도 가장 가까워 보이는 '교육목표'를 찾아보면 "자연과 사회에 관한 기초원리를 이해시키고, 정보처리능력과 탐구능력을 길러, 합리적이고 진취적으로 생활을 개척해 나아갈 수 있게 한다(3면)"일 것 같다. 그러나 이 '교육목표'중의 앞 부분, 즉 "자연과 사회에 관한 기초원리를 이해시키고"라는 표현만을 분리시켜서 兩者간의 연계성을 찾아 보고자 해도 역시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볼 때, 「중학교 교육과정」의 '교육과정목표'가<sup>5)</sup> 사회과의 '교과목표'와 연계되는 정도는 미미한 것 같다.

### 3. 社會科 1學年の 目標과 內容

위의 '사회과'의 '교과목표'가 '1학년목표 및 내용'에 어떻게 分散되어 구체화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로 하겠다. 이를 위하여 먼저 '1학년'의 '목표'와 견주어 보고, 다음으로 그 '목표'가 '내용'으로 연계되는 바를 확인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부터 '내용'이 분석의 대상이 되어 이에 이어질 「교과서」의 분석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질 것이다.

#### a. 社會科 1學年の 目標

모두 5개 항목으로 나뉘어 기술된 중학교 사회과 1학년의 목표가운데에서 위의 '교과목표'중의 제 2항과 연계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비교적 분명하고도 여러 항목이다. 이는 당연한 일이지만 다른 한편의 問題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교과목표' 4개 항목중의 어느 특정 항목만이 '1학년' '목표'의 여러 항목과, 그리고 밀접하게 연계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교과목표' 4개 항목의 내용이 각학년에 고루 연계되어야 하며 또 그 표현의 一般性和 具體性的 정도도 層化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연계성이 분명히 표기상·항목상에서가 아니라, 意味上으로 보아 분명해야만 할 것이다.

'교과목표' 제 2항이 '1학년'의 '목표' 2개 항목에 분명하게 연계되어서 결과적으로 '교과목표'중의 다른 3개 항목과의 연계성은 너무 허술함을 알 수가 있다. 이를 보이기 위하여 '교과목표' 제 2항과 '1학년' '목표' 제나항 및 제다항을 차례로 보면 다음과 같다.

"2) 각 지역의 특성을 인간과 환경과의 관련속에서 이해하게 하고 인류생활의 발달과정과 각 시대의 문화적 특색을 파악하게 한다(44면)"

"나) 향토, 우리나라 각 지방 및 세계 여러 지역의 특성을 인간과 환경과의 관련속에서 이해하게

(5) 「교육법」 제101조에서의 '중학교 교육'의 '목표'와 「중학교 교육과정」에서의 '교육목표'를 區分한 後者임.

하고, 우리나라 및 세계의 발전가능성을 발견하게 하며,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다) 고대에서 중세에 이르는 동양사회 및 서양사회의 변천과정과 그 문화적 특색을 이해함으로써 세계사의 발전적 흐름을 파악하고, 동서양 문화의 기반을 이해하게 한다(45면)”

위에서 보듯이 ‘교과목표’에서의 “각 지역”이 ‘1학년목표’에서의 “향토, 우리나라 각 지방 및 세계 여러 지역”으로 具體化되었다. 그리고 “각 시대”가 “고대에서 중세에 이르는”으로 連繫되어 있다.

#### b. 社會科 一學年の 內容

「중학교 교육과정」의 ‘교육과정목표’가 사회과의 ‘교과목표’로, 다시 이 ‘교과목표’가 ‘1학년’의 ‘목표’로 이어져 내려와서 이것이 ‘중학교 사회과 1학년’의 ‘내용’에 反映된 바를 분석하기로 하겠다.

모두 10개 항목으로 나뉘어 나열된 내용은 인간생활과 사회현상, 향토의 생활, 우리나라 각 지방의 생활,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생활, 유럽—아메리카 및 오세아니아의 생활, 인류 문화의 기원, 아시아 사회의 성장, 서양 고대문화의 형성, 서양 중세사회의 성장, 아시아 사회의 변천이다.

이 가운데에서 제 3 항목인 ‘대우리나라 각 지방의 생활’은 “우리나라 각 지방의 특성을 자연환경과 주민생활을 중심으로 이해하게 하고, 이를 서로 비교, 파악할 수 있게 한다(46면)”고 하고, 이에 딸린 4개의 細項을 나열하고 있는 바, 그것들은 “(1)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 (2) 중부지방의 생활 (3) 남부지방의 생활 (4) 북부지방의 생활(46면)”이 그것들이다.

‘1학년’ ‘목표’가 이 ‘내용’과 어떻게 연계되는가를 보기 위하여 前者中の “4) 향토, 우리나라 각 지방 및 세계 여러 지역의 특성을 인간과 환경과의 관련속에서 이해하게 하고, 우리나라 및 세계의 발전 가능성을 발견하게 하며,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45면)”는 항목이 ‘내용’가운데의 어느 部分과 연계되는가를 보기로 한다. 이 가운데의 “향토, 우리나라 각 지방 및 세계 여러 지역”이라는 표현이 ‘내용’에서의 ‘향토생활’을 비롯한 여러 항목의 ‘내용’에 直接 연계됨을 알 수 있다. 특별히 ‘목표’중의 “우리나라 각 지방”이라는 表現은 ‘내용’중의 “우리나라 각 지방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그리고 “각 지방”이 중부·남부·북부로 具體化되어 있기도 하다.

위와 같이 특정한 教科의 특정한 學年에까지 내려와서는 그 ‘목표’와 ‘내용’이 분명하게 그리고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 B. 教科用圖書에 關한 規定<sup>(6)</sup>

「교과서」에 관한 一般的인 논의는 이 論究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實相’ 그

(6) 大統領令, 第12508號(1988.8.22).



대로의 상황만에 주의를 기울이기로 한다. 그리하여 「교과서」에 관한 현행의 法·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의 ‘定義’ 등에 관한 것들이 앞에서 분석한 「교육과정」상의 ‘목표’ 및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이코자 한다.

### 1. 教科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과서란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주된 교재를 말하며”, 文敎部가 저작권을 가진 1종 교과서와 문교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2종 교과서로 구분된다. 위 定義에서의 “학교”란 「교육법」 제157조 제1항에 의하여 즉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 각 학교의 교과용 도서는 문교부가 저작권을 가졌거나 검정 또는 인정한 것에 限한다”는 규정의 前半의 표현에 의하여 유치원·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만을 뜻한다. 그리고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과용 도서”는 이 「교과서」 이외에도 「교사용 지도서」와 「인정도서」가 있다.

학교 교육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 어우러져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과서」와 「지도서」가 서로 다른 種類의 것이어서는 안되며 「지도서」와 「교과서」가, 그리고 「교과서」와 「지도서」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지도서」는 「교과서」의 實體를 포괄하고 있으므로 ‘교과서 지도서’라고 표현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實定法·令상의 ‘교육과정’의 定義 이외에 문교부 교육과정 담당관실에서 펴낸 「좋은 교과서란 어떠한 교과서인가?」라는 책자의 ‘교과서의 정의’에서 보면, 이 밖의 몇 가지가 추가되어 「교과서」의 개발과정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책자에서 소개하고 있는 餘他の 定義로는 “교과서는 어느 한 사회나 국가의 교육이념이나 교육목적에 달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에 알맞게 편집된 학습자료로서 학생용 도서이다(1면)”라는 것이 있다. 이 정의에서 보듯이, 그리고 이 論究가 當爲로 設定하고 있듯이 ‘교과서’란 大韓民國이라는 국가의 弘益人間的 교육이념과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며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에 기여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의 기본정신, 즉 ‘구성의 방향’에 알맞게 편집된 것이다. 또 다른 하나의 定義로는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목표 및 내용 등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알맞게 풀이하고 편집한 학교 학습의 도서이다(2면)”는 것도 있다.

여기에서 보듯이 「교과서」는 교육이념, 교육목적, 교육과정(의 목표 및 내용)에 기초하고 근거하여 그것을 구체화한 주된 교재이다. 그렇지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의 ‘교과서’의 정의는 너무 간략하여 그 근거를 분명히 밝히고 있지 못하다.

### 2. 1種 圖書

‘1종 도서’는 「교과서」가운데에서 문교부가 저작권을 가진 도서(1종 교과서)와 지도서가운데서 문교부가 저작권을 가진 도서(1종 지도서)를 말한다. 그러므로 ‘1종도서’는 ‘1종

교과서'와 '1종 지도서'로서 '교과서'와 '지도서'를 '도서'로 고친 것이다. '교과용도서'에는 '교과서', '지도서' 및 '인정도서'까지가 포괄되므로 '교과서'가 '교과용도서'를略稱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이 「교과용도서」중의 「교과서」가운데의 1종도서(1종 교과서)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3~4면).

1. 국민학교의 교과서 및 지도서
2. 중학교의 교과목중 국어, 도덕, 국사의 교과서와 지도서
3. 고등학교의 교과목중 국어(독본), 국민윤리, 국사의 교과서와 지도서
4.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과목중 제 2호 및 제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과목으로서 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강하는 교과목의 교과서와 지도서
5.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과목중 제 2호내지 제 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과목의 교과서와 지도서로서 검정신청 또 검정합격본이 없는 것
6. 국민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제외한 각급학교의 교과목 중 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의 교과서와 지도서

그러므로 '중학교' '사회'의 「교과서」가 1종인 까닭은 위의 제 4호에 따라 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기 때문인 바, "중학교의 교과목 중 국어, 도덕, 국사의 교과서" 이외에 '사회'의 「교과서」를 문교부장관이 1종 교과서로 하는 것이 왜 필요하다고 인정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가운데에서 이 論究가 직접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교과서, 그 가운데에서도 '중학교·사회과·교과서'와 관련되는 규정은 위와 같으며 이 「규정」의 제51조는 이 「습」에 의한 교과용도서 이외의 도서는 이를 수업중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 C. '1종교과서 집필지침'

'1종도서'는 '1종교과서'와 '1종지도서'를 포괄하지마는 이 가운데에서 前者만의 집필지침을 분석하기로 한다. 먼저, 일반지침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더 올라가서는 「중학교교육과정」에서의 여러 목표 및 내용과 어떻게 연계되는가를 분석하고 나서, '교과목별 지침'중의 '중학교·사회과·교과서·집필지침'이 위의 '일반지침'을 어느 정도로 긴밀히 반영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기로 한다.

문교부가 一種圖書를 편찬하기 위해 마련한 細部計劃의 '목적'은 "국민학교, 중학교의 1종 교과용도서를 교육이념 구현과 제 5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육목표 달성에 적합하도록 편찬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 '계획'의 '방침'은 다음의 다섯가지이다(1면).

- 가. 제 5차 교육과정의 구성방향 및 교육목표 달성
- 나. 교육내용의 양과 수준의 적정화
- 다. 자율학습의 강화를 위한 편찬체제의 개선
- 라. 학습의 효과증대를 위한 다양한 보조교과서의 개발

마. 지역관련 단원개발(국민학교 : 사회과)

여기에서의 “목적”이 “방침”보다 上位의 것, 즉 더 일반적·포괄적인 것이라면 교육 ‘이념’이 목적에서 언급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목적’에서 “제 5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육 목표의 달성”을 언급하고, 이 ‘방침’에서 ‘구성방향’을 언급하는 것은 位階에 맞지 않는다. 모든 「교육과정」은 ‘구성의 방향’에 따르며 ‘교육목표’는 각급학교의 「교육과정」마다 달리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위와같은 ‘목적’과 ‘방침’에 따른 ‘88년도 1중도서 편찬지침’은 ‘체제’와 ‘집필지침’으로 되어 있으나, 여기에서는 ‘집필지침’만을 분석하기로 하였다.

### 1. 一般指針

‘일반지침’은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로 나뉘어 기술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교과서」에 관한 것만을 보기로 하였다. 모두 22개 항목의 ‘지침’이 제시되어 있지만 「교과서」의 내용에 직접 관련되는 것만을 골라서 보기로 하였다. 이 論究의 일관된 목표가 「교육법」의 ‘이념’에서부터 「교과서」의 ‘내용’에 이르는 사이의 연계성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① 자유민주주의 체제와의 일치 :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의 정신을 기본 바탕으로 편찬하여야 한다”(38면)는 것이다. 이는 「교육과정」에서의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에 보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굳건한 바탕위에”라는 표현과 흡사하다. 다음으로, “② 교육목적 및 목표와의 일치 : 교육법과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우리나라 교육목적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 목표와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동법시행령”에는 “우리나라 교육목적”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다만 짐작하여 끼워넣은 虛辭일 뿐이다. 그리고, “③ 교육과정 내용의 반영 :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의 목표 및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침’중의 ‘교과의 목표’가 ‘교과목표’와 같은 것이라면 약간의 論議거리가 될 수 있다. 그리하여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의 목표 및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표현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 목표 및 학년별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로 고쳐져야 할 것이다. ‘교과의 목표 및 내용’은 ‘교과의 목표와 (교과의) 내용’인 바, 「교육과정」에는 ‘교과(의) 목표’는 있지만, ‘교과(의) 내용’은 없으며 다만, ‘학년 목표 및 내용’중에 각 학년별로 ‘목표’와 ‘내용’이 밝혀져 있기 때문이다. 이 또한 관련되는 「法」, 「令」 또는 文書들을 세심하게 검토하지 않은 결과인 것 같다. 이 밖의 ‘지침’중에서 ④ 내용의 정선 ⑤ 내용의 수준 ⑥ 내용의 진술 ⑦ 내용의 양 ⑧ 내용의 정확성 ⑨ 내용의 조직 배열 등과 같은 ‘내용’에 관한 것들이 많지만 이는 이 ‘지침’의 근거인 「교육과정」 또는 「교육법」 등과의 연계성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모두 省略하기로 한다. 「교과서」의 내용과 관련될 것으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여기에서의 ‘내용’은 그 實體가 없이 ‘정선’, ‘수준’ 등만을 막연하게 언급하고 있을 따름이기 때문이다.

## 2. 中學校 社會科 1學年 教科書 執筆指針

여기에서 분석한 「1중도서 편찬 세부계획」은 국민학교와 중학교 兩者를 위한 것이지만 이 가운데에서 中學校의 部分에만 관심을 둔다. 그리고 여러 교과목중에서 사회과만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이 論究의 목표이다. 또한 '1중도서' 중의 '교사용지도서'를 除外한 「교과서」만에 관심을 두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집필지침'을 분석하기로 하겠다. 이 '지침'은 1989년도부터 사용되는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위한 것이다. 모두 12항목의 (공통)지침을 제시하고 나서 '지리분야' 3개, '세계사분야' 5개 항목을 다시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 공통적인 '지침' 중의 1, 2, 4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35~6면).

1. 중학교 1학년 사회는 지리 영역과 세계사 영역의 통합과정이므로 영역간의 지나친 분과나 이로 인한 중복을 가능한 한 방지하도록 하고 두 영역간의 공통적인 부분은 가능한 한 통합하도록 한다.
2. 단일 체제에 대하여 영역간의 학문적 접근방법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이를 통일하되 그 기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다.
3. 학년별, 학급별 계열성을 고려하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지적 수준에 맞도록 집필한다.

위의 3개 항목만이 이 論究의 目標에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1'은 '1학년의 사회'가 '지리영역과 세계사 영역의 통합과정'이라는 것, '2'는 '영역간의 학문적 접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를 '통일'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4'는 '계열성'을 고려하라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통합과정'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야가 어떻게 '통합'되어질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서로 다른 접근방법을 '통일'하기가 또한 쉽지 않을 것 같다.

다음으로, '지리부분'의 '집필지침'을 보기로 하겠다. 이는 「중학교 사회」 교과서중의 '우리 나라 각 지방의 생활'과의 연계성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중학교 사회)'의 '(지리분야)'의 '집필지침'은 모두 3개항으로 제시되어 있는 바, 이 論究에서 직접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과 관련되는 항목은 제 2항목이다. 이를 보면 아래와 같다(36면).

2. 한국의 3지방 구분에 있어서 중부—북부의 경계는 휴전선으로 하고 중부—남부의 경계는 “충남·전북간 경계, 충북·전북간 경계, 충북·경북간 경계, 강원·경북간 경계”를 따른다.
3. '마) 유럽, 아메리카 및 오세아니아의 생활' 단원의 동부 유럽에는 소련을 포함하여 다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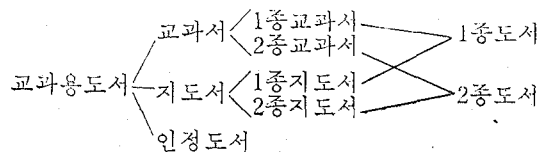
이상에서 '1중도서 집필지침' 중의 '일반지침'과 '중학교·사회과 1학년·교과서·집필지침'을 제시하고 이것들이 次上の 制約 또는 統制原理에 어떻게 연계되는가를 보고자하였다. 그리고 그 연계성이 다음에 이어질 「교과서」 그 자체의 內容과 연계되는 바의 準據로도 쓰이게 하였다.

**D. 論 議**

「중학교 교육과정」중의 ‘교육목표와 편제’는 ‘교육목표’, ‘편제와 시간배당’, 그리고 ‘운영지침’으로 되어 있는 바, 이 가운데의 ‘교육목표’는 “교육법에 규정된 중학교 교육목적과 이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을 토대로 하여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고 하고 모두 6개 項目의 교육목표를 나열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논의거리는 이들 6개 항목의 ‘교육목표’가 「교육법」 제101조의 규정, 즉 “중학교 교육은 제100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한다”고 하여 모두 4개 항목을 나열한 규정과 어떻게 區分될 수 있는가이다. 「중학교 교육과정」중의 ‘교육목표’는 “교육법에 규정된 중학교 교육목적”을 “토대로 하여” 설정되었으며, 위의 제101조의 “目標”도 “제100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학교 교육과정」에서의 “교육법에 규정된 교육목적”이 바로 「교육법」 제100조의 “중학교는 국민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위에 중등보통교육을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학교 교육과정」에서의 ‘교육목표’와 「교육법」에서의 중학교의 “목표”는 결국 같은 규정, 즉 「교육법」 제100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법」에서의 목표와 「중학교 교육과정」에서의 그것이 同一하지 않으며, 또 同一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를 解決하기 위해서는 「교육법」 제101조에 규정된 목표는 중학교 교육의 ‘일반목표’로, 「중학교 교육과정」상의 목표는 ‘교육과정’의 목표로 概念上 區分되어야 할 것이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은 次上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教育課程告示」와 아무런 연계성도 없이 직접 ‘교육법 제157조 제 2 항의 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을 明記하고 있다(제 1 조). 이는 앞(II-C)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교육법」에서 「교육과정」은 문교부장관에게 위임하여 「문교부고시」로 규정하게 되어 있고, 「교과서」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것에서 緣由되는 것으로 보인다(제155조 제 1 항). 이는 교육·교육과정·교과서로 이어지는 位階上의 어색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의 다른 하나의 논의거리는 用語上의 것이다. “교과용도서”라 함은 교과서·지도서 및 인정도서를 말하며(제 2 조 제 1 항), 이 가운데의 ‘인정도서’ 이외의 ‘교과서’와 ‘지도서’만을 다시 각각 1종과 2종으로 나누어 각각의 1종을 “1종도서”로, 그리고 2종을 “2종도서”로 命名하고 있다.



여기에서 「교과용도서」에서의 「도서」와 「1종도서」 및 「2종도서」에서의 「도서」가 같은 의

미일 수 없는데도 같은 것처럼 쓰이고 있다. 「교과용도서」가 곧 「교과서」와 「지도서」와 「인정도서」의 각각과 같으며, 「교과서」가 곧 「1종교과서」와 「2종교과서」의 각각과 같다고 보면 곤란하다. 分類當하는 것이 분류한 것의 한 종류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1종도서’에서의 ‘도서’는 「교과용도서」에서의 「도서」가 분류된 것이 다시 분류된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름으로 命名되어야 할 것이다.

「1종도서 편찬 세부계획」중의 한 항목이 ‘1종도서 편찬지침’인 바, 여기에서의 ‘세부’는 어색하다. 오히려 “1종도서 편찬지침”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이다.

보다 중요한 논의거리는 중학교 사회과의 ‘집필지침’에서 찾을 수 있다. “중학교 1학년 사회는 지리 영역과 세계사 영역의 통합과정”인데도 그 통합과정의 집필지침, 바로 그것을 제시하는 文章에 ‘영역간’이라는 표현과 ‘분야별’이라는 표현이 각각 두번씩 쓰이고 있으며, ‘집필지침’도 분야별로 유의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지리분야’와 ‘세계사분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통합’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표현은 스스로 그것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 IV. 中學校 「사회 1」 教科書

形式에서는 「教育法」에서 중학교의 「사회 1」 교과서의 ‘Ⅲ. 우리나라 각 지방의 생활’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內容에서는 우리나라의 教育理念인 ‘弘益人間’에서부터 ‘중부지방’의 ‘수도권’이 “한반도의 중심지”임을 알게 되기까지에 걸쳐 맺어온 각단계간의 연계성을 확 인하고자한 바가 이제 그 마지막 단계에 다달았다.

중학교 「사회 1」은 ‘머리말’과 10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는 ‘머리말’과 “Ⅲ. 우리나라 각 지방의 생활”만을 분석하기로 하겠다.

##### A. 「머리말」

먼저, “중학교 사회과에서는 국민학교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하여, 1학년에서는 지리적인 내용과 사회적인 내용을” 공부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어서, 이 교과서의 내용의 중요성과 목적을 기술한 다음에 “이 교과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새 교육과정에 따라 중학교 사회 교과서로 개발한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어서 “이 책을 편찬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하고, 모두 7개 항목의 “주안점”들을 나열하고 있다. 이들 항목의 요점을 추리면 다음과 같다. 즉 (1) 지리적인 내용과 역사적인 내용의 대강 (2) ‘이 단원의 공부를 위하여’와 ‘생각해 볼 문제’를 둔 까닭 (3) 주요 개념이나 사실을 여백에 제시한 사실 (4) ‘학습에의 도움글’을 실었고 최선의 사진, 통계 등을 수록한 사실 (5) ‘주요활동’을 제시하고 ‘학습 정리’를 실은

까닭 (6) 각주를 단 사실 (7) 제 1 단원의 특성이다.

이에 이어서 끝으로, 이 책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바를 적고 있다. 위의 ‘주안점’을 가운데에서 제Ⅲ단원의 내용과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는 항목을 따로 가려내기는 어렵지만 “(1) 지리적인 내용에서는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지역의 주민 생활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음을 밝히고 있는 바,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에 관한 내용만에 限定될 것이다.

이 “머리말”의 내용이 중학교 사회 교과서 집필지침을 그대로 따르고 있음은 물론이고 ‘이 단원의 공부를 위하여’, ‘생각해 볼 문제’, ‘주요 활동’, ‘학습 정리’ 등을 두고 있기도 하다.

### B. ‘Ⅲ. 우리나라 각 지방의 생활’

중학교 「사회 1」 교과서에 실린 10개의 단원 가운데의 ‘Ⅲ. 우리나라 각 지방의 생활’ 단원은 ‘1. 중부 지방의 생활 2. 남부 지방의 생활 3. 북부 지방의 생활’로 나뉘어졌다. ‘Ⅲ’ 단원 전체를 위한 ‘이 단원의 공부를 위하여’에는 ‘우리나라의 지역 구분’에 관한 내용을 실고 있는 바, 크게는 중부 지방, 남부 지방, 북부 지방으로 나누며 그 각각의 경계와 각 지방을 다시 2~3개의 小地方으로 나누어 다룰 것을 豫告하고 있다.

“1. 중부 지방의 생활”은 그 앞부분에 “〈생각해 볼 문제〉” 3개 항목을 실고나서 “중부 지방”을 수도권, 관동지방, 호서지방으로 나눈 것 가운데 “(1) 수도권”을 다루고 있다. 지도넷, 사진 셋, 도표 두쌍(네개)을 곁들이면서 “중부 지방”의 “지리부분”을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다. 이 “중부지방”의 끝에는 “〈주요 활동〉” 4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2. 남부 지방의 생활”과 “3. 북부 지방의 생활”에서도 그 각각의 앞부분에 “〈생각해 볼 문제〉”를, 그리고 끝부분에 “〈주요 활동〉”을 실고 있는 것은 “1. 중부 지방의 생활”의 경우와 같다. 다만 “남부 지방의 생활”의 중간쯤에 “[학습에의 도움 글]”이라고 하여 “광양 제철 공업단지”에 관한 짤막한 글을 끼워넣고 있다.

‘Ⅲ’ 단원이 모두 끝난 뒤에 “[학습 정리]”라 하여 모두 9개 항목으로 이 단원 전체의 내용을 요약(“정리”)해 놓고 있다.

“1. 중부 지방의 생활”을 다시 수도권, 관동지방, 호서지방의 3개 지방으로 나눈 가운데의 “(1) 수도권”은 한반도의 중심지, 자연환경, 수도 서울, 서울의 위성 도시, 각종 공업이 발달된 경인 지역, 수도권의 농업지역이라는 6개의 소제목으로 나누어서 관련되는 내용을 실고 있다.

이 6개 小題目的 내용들 가운데서 “한반도의 중심지”를 읊기면 다음과 같다(p. 44).

수도권은 한반도의 중앙부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찍부터 이 지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역사가 전개되어 왔다. 그리하여, 이 지방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이 지방에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행정 기관, 산업 시설, 문화 기관 등이 집중되어 많은 인구가 모여들고 있으며, 경부선 철도와 경부 고속도로를 비롯한 육상 교통로들도 이 지방을 중심으로 하여 사방으로 뻗어 있다.

위 내용 중의 “수도권”에 脚註 번호 (1)을 붙이고 같은 쪽 아래에 “(1) 수도권은 대체로 서울과 그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인천, 경기도로 이루어진 지역을 말한다”라고 풀이해 놓고 있다.

이제까지 보아 온 바와 같은 중학교 「사회 I」 교과서의 一部分의 내용중에 “집필지침”중의 “(지리분야)”에 관한 것들과 연계되는 바가 거의 없다. “(지리분야)”에는 다만 3개 항목의 “지침”만이 제시되어 있는데다가 그 가운데의 제 2 항목이 위의 「교과서」의 내용과 관련된다. 그러나 그 “지침”은 3지방의 境界에 관해서만 언급하고 있어서 도무지 “지침”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 C. 論 議

“교과서 집필지침”이 너무 막연하고 概略的이어서 「교과서」와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로 연계되는가를 분석할 수가 없을 지경이다. 어디까지나 “지침”에 불과하니까, 그리고 그 때야만 著作者가 자유롭게 쓸 수가 있으니까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지침”은 “어떤 사물(생활이나 행동 따위)의 지도적 방법이나 방향같은 것을 인도하여 주는 준칙”이며, “준칙”은 “準據할 기준이 되는 법칙, 準用할 규칙”인 바, 이 “집필지침”은 이와 같은 것이 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지침”에서는 “충남—남부의 경계는 충남·전북간 경계—충북·전북간 경계, 충북·경북간 경계, 강원·경북간 경계”를 따르게 되어 있지만(36면) 「교과서」에서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경계는 금강 하류와 소백산맥을 잇는 선”(42면)으로 하고 있어서 前者는 行政上의 경계를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反하여, 後者は 강, 산맥과 같은 “지리”적 상황을 따르고 있다. 그리하여 兩者가 서로 一致하지 않아서 충남의 금산지방과 전북의 익산지방이 애매하게 되었다.

또 한가지 논의거리는 중학교 「사회 I」 교과서의 집필을 위한 ‘교과목별지침’에는 그 교과서에 실릴 內容 그 自體에 관한 것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아서 “일반지침”중에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 및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지침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지침’에서는 參照源으로만 제시한 「교육과정」이 사실상의 “지침”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법, 교육과정, 교과서 집필지침, 교과서로 이어지는 位階가 자연스럽지 못하다.



## V. 要約과 結論

### A. 要 約

이 論究의 目的은, 「教育法」에 규정된 教育의 理念이나 目的 등이 그 下位의 法·令·告示·規定·指針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論理가 실제로 어느 정도 成立되어 있는가를 分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分析한 事項은 (1) 「교육법」 및 「교육법시행령」에 규정된 「교육과정」관련 條項. (2) 위의 「法」 및 「令」과 「과교육과정고시」 중의 ‘교육과정구성의 방향’ (3) 「교육과정」의 ‘방향’ 과 「중학교 교육과정」 (4) 「중학교 교육과정」의 ‘목표’와 중학교 사회과의 목표 (5) 중학교 사회과의 목표와 중학교 사회과 1학년의 목표 및 내용 (6) 중학교 사회과 1학년의 목표 및 내용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7)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과 ‘1종 교과서 집필지침’ 중의 ‘일반지침’ (8) ‘일반지침’ 과 ‘중학교 사회과 1학년 사회과 교과서 집필지침’ (9) ‘중학교 사회과 1학년 교과서 집필지침’ 과 중학교 「사회 1」 교과서 사이의 連繫性이다.

위와같은 分析의 結果로 「교육과정」과 「교과서」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探究의 領域을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법」중 이 論究의 目的과 직접 관련되는 조항은 제 1조(이념과 목적), 제 2조(방침), 제 100조(중학교 教育의 목적), 제 101조(중학교 教育의 목표), 제 155조(학과·교과)로서 教育基本法에서 「교육과정」은 말할 것도 없고, 「교과서」에 관해서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은 特異하다.

「교육법」상의 관련 條項이 「교육과정고시」중의 ‘교육과정구성의 방향’ 과, 더 나아가서는 「중학교 教育과정」의 ‘교육목표’와 직접 연결되는 것으로 보이는 部分을 찾기는 어렵다. ‘자주적인 사람’을 기르기 위한 것이 가장 가깝게 연결된다고 보더라도 이를 위한 구체적인 항목인 ‘주체적인 자아의식, 자율적인 의사결정, 진취적인 개척정신, 투철한 국가의식’의 어느 것과 어떻게 連繫되는가는 분명하지 않다.

「중학교교육과정」의 목표가 그것의 ‘사회과’의 목표와, 그리고 ‘사회과 1학년의 목표 및 내용’과 連繫되는 바 또한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사회과’의 ‘목표’의 一部가 ‘중학교 사회과 1학년의 목표’와 連繫되는 바는 비교적 뚜렷하다. ‘사회과’의 ‘목표’중의 “각 지역의 특성을 인간과 환경과의 關連속에서 이해하게 하고, 인류생활의 발달과정과 각 시대의 문화적 特色을 파악하게 한다”는 부분은 그 ‘1학년’의 ‘목표’중의 “향토, 우리나라 각 지방 및 세계 여러지역”으로 具體化되어 있다.

‘중학교·사회과’의 ‘목표’ 또는 ‘중학교·사회과·1학년·목표’는 ‘중학교·사회과·1학년·내용’과 정확히 一致하는 부분이 있다. 이는 ‘목표’의 進술중에 ‘내용’이 이미 언급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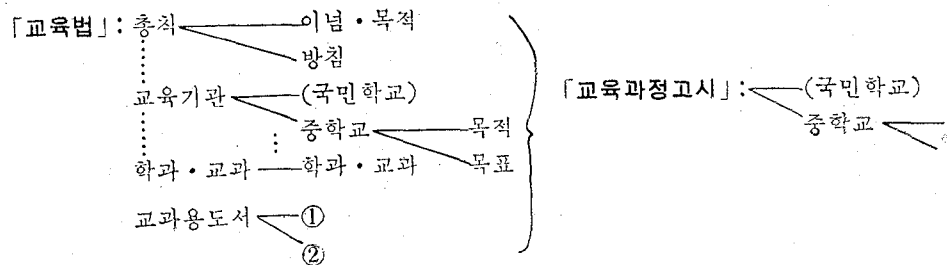
어 있어서 거의 機械的인 것이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교과서」의 목표나 내용에 관한 조항은 없다. 순전히 「교과서」의 ‘발행·공급, 가격사정’ 등과 같은 管理에 관한 것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교육과정」에서 「교과서」로 이어주는 役割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 집필지침’에 示唆하는 바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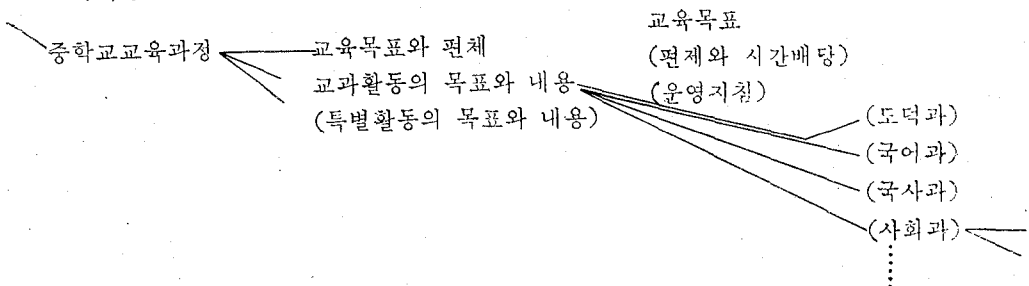
‘1종교과서 집필지침’에서의 ‘일반지침’은 몇가지 중요한 ‘지침’을 提示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교과목별지침’으로서의 ‘중학교·사회과·1학년·교과서·집필지침’은 “세계사 분야”와 “지리분야”로 나뉘어 있으며 이 가운데의 後者は 지극히 些少한 ‘지침’만을 내어 놓아 그것이 「교과서」에 직접 연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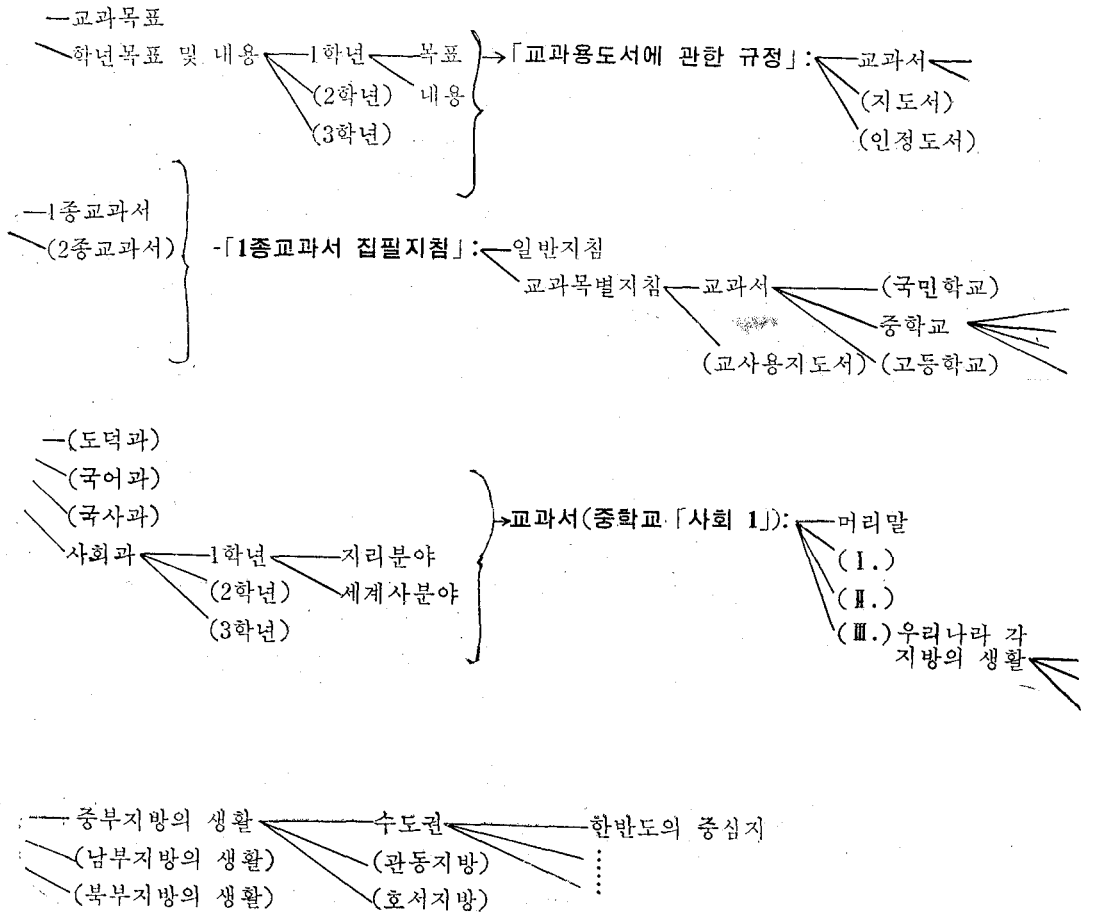
위와같은 여러 層의 規定에 따라서 집필된 「중학교 사회 1」 교과서 가운데의 ‘머리말’은 ‘집필지침’을 고스란히 따르고 있으면서도 몇가지 더 나아간 모습을 담고 있다. 그리고 제 3단원인 ‘우리나라 각 지방의 생활’은 앞의 “교과목별지침”에 정확히 一致하는 내용을 실고 있다. 그러나 ‘지침’이 제시한 地方間的 境界를 약간 달리하고 있다. ‘머리말’에서 本文의 내용을 간략하게 비친 바가 제 3단원의 內容으로 연결된 것은 확실하지만 내용에 관한 것 일 뿐 內容 그 自體는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것은 못된다.

이 論究의 分析對象과 節次를 要約하면, 즉 위의 ‘要約’을 더욱 간략히 體系化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구성의 방향





**B. 結 論**

이 論究의 全般的인 過程을 통하여 歸結되는 바를 綜合하면 다음과 같은 結論이 맺어진다. 첫째, 「교육법」이 委任하는 사항들이 더욱 分明히 지시되어 相互間的 位階에 混亂을 빚지 않게 해야겠다. 특별히 특정한 법령·규정 등은 次上의 것 및 次下의 것과 調和를 이루어야 될 것이다. 현재와 같은 혼란은 그때그때의 必要에 따라 즉흥적으로 對應해온 데서 연유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教育課程關聯의 모든 法·令 등을 대폭 정비해야 할 것 같다. 둘째, 교육의 理念에서 目的으로, 그리고 목적에서 目標로, 또한 목표에서 「교육과정」水準의 '목표'로 연계되는 바가 分明하지 않다. 각 교과목의 각 학년의 目標와 內容이 「교과서」로 이어지는 단계에 이르러서야 그것들 서로간의 연계성을 확인한 수가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의 根源으로서의 보다 上位의 여러 法·令이 통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

할 수 있게 할 方途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세째, 現在의 것과 같은 「교육과정」은 더욱 詳細化되어야겠다. 「교육과정」과 「교과서」 사이에 「교사용 지도서」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교과용도서」의 範疇에 드는 것으로서 전반적인 統制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교육과정」 그 자체를 보다 상세화·구체화하여 그것이 「교과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네째, 各 段階別 ‘목표’와 ‘내용’이 다음 단계로 變質되지 않고 이어져 나아가게 되는 바가 보다 분명하게 표현되어야겠다. 항목의 數가 반드시 같지 않고 활용되는 單語가 같지 않다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 구체화된다는 것은 우선 항목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앞의 것이 뒤의 것으로 연계될 때 그 質이 同一한지가 더욱 중요하다. 물론 앞의 것이 보다 추상적·일반적·보편적·포괄적인 것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항목수(즉 量)와 水準의 高低(즉 質)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를 보다 철저히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육과정」을 제정 혹은 개정하는 일에 참여했던 人士가 「교과용도서 집필상의 유의점」을 마련하는 일에도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하여 「교육과정」의 ‘총론’ 부분에 익숙한 인사가 교과용도서의 ‘일반지침’을, 그리고 ‘각론’의 각 교과에 능통한 인사가 ‘교과목별 집필지침’을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同質적으로 연계시키는 데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여섯째, 現行的 「教科用圖書에 관한 規定」이 「교육과정」을 「교과서」로 연계시키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교과서」 바로 그것을 규정해야 하며, 「교과서」를 저작·발간·공급하는 일에 관한 것은 별도의 규정으로 돌리고 이 「규정」이 「교육과정」상의 목표와 내용을 교과서 집필 지침으로 번역해주는 일을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現行的 것과 같은 ‘집필지침’의 보다 일괄적·보편적인 근거가 되도록 하여 「교과서」쪽의 最上位의 것으로서 곧바로 「교육과정」 쪽과 연계되게 해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金斗楨 外, 學校 教育課程의 爭點과 對應策—국제비교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88.  
 문교부, 중학교 교육과정, 서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87.  
 \_\_\_\_\_, 1종도서편찬 세부계획(중학교), 서울: 문교부, 1987.  
 \_\_\_\_\_, 좋은 교과서란 어떠한 교과서인가?, 서울: 문교부, 1988.  
 \_\_\_\_\_,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서울: 문교부, 1988.  
 법제연구원(편), 文敎法典, 서울: 법제연구원, 1989.

- 법제처, 各國의 教育關係法—法制資料—第101輯, 서울:법제처, 1979.
- \_\_\_\_\_, 各國의 教育關係法—法制資料—第134輯, 서울:법제처, 1985.
- 尹八重 外(編), 教育課程總覽, 서울:법제연구원, 1984.
- 李洪雨, 教育課程과 教科書 改善을 위한 基礎研究(未刊行), 1979.
- 한국교육개발원, 중학교교과서 개선을 위한 연구, 서울:한국교육개발원, 1982.
- \_\_\_\_\_, 韓國의 教科書 變遷史, 서울:한국교육개발원, 1982.
- \_\_\_\_\_, 중학교 사회 1(교과서), 서울: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89.
- \_\_\_\_\_, 중학교 사회 교사용지도서 1, 서울: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89.
- Meredith Damien Gall, Handbook for Evaluating and Selecting Surriculum Materials, Boston: Allyn and Bacon Inc., 1981.
- UNESCO(ed.), World Survey of Education, Paris: Unesco, 1971.

## Connections between Curriculum and Textbook

Pahl-joong Yoon

The purpose of this discussion is to analyze the scope and degree of the connections between curriculum and textbook in use today. The discussion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contents of textbook must be consistent in the aims of education law and other related rules.

The education law has some articles leaving curriculum and textbook in ministerial and presidential ordinance respectively. But it is rather peculiar case compared with some foreign ones. The connection between the education law and the curriculum is not strong enough to identify any articles or descriptions directly matched one by one. Prescriptions on textbook does not play any roles of connecting curriculum with textbook, but it controls the management of textbook publishing, distributing, price-assessing, etc. The guiding principles on writing textbook in general or in given subject-matters play very important roles of directing the scope and degree of every textbook.

The consequences of this discussion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ll of the laws-ordinances-guides should be harmonized hierarchically in their contents and levels. Second, stronger and more various connection should be established especially in educational aims-goals-objectives in every related laws. Third, curriculum should be specified so detail as to connect it with contents of textbooks. Forth, aims and contents should be concretized gradually from the general to the specific, keeping the essential qualities originated in precedent provision. Fifth, Specialized persons engaged in curriculum construction-revision process should prepare the guide lines for writing textbook.